

섬지역 원거리 교통비 수가 변경에 따른 중단 및 신청 안내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
예정에 따라

2026년 10월 1일부터 섬지역 원거리 교통비 수가가 인상(6,800원→
15,000원/일)됩니다.

이에, 현재 원거리 교통비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
같이 정비사항을 안내하오니, 반드시 기존 적용내용을 중단하고 변경
된 수가로 신규 적용신청하여, 원활한 급여비용을 지급 할 수 있도록
정비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비사항 안내

- (정비대상) 섬지역 원거리 교통비 적용 건
- (정비기간) '26. 9. 17. ~ 10. 1.
- (처리방법) 기관포털/ 요양자원/ 교통비신청/ 원거리교통비용 신청
 - 기존 적용건 중단신고('26.10.1.) → 인상된 수가로 신규 적용신청('26.10.1.)
 - ※ '26.10.1. 이후 원거리교통비 적용 신청(신고)건에 대해 소급 적용 신청 불가
예시) 적용 신청(2026.10.2.) → 적용 시작일(2026.10.2.)
- (유의사항)
 - 적용기간 중복 방지 위해, 기존 적용건을 반드시 중단('26.10.1.)하고, 신규 적용신청('26.10.1.)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신청 전 수급자 급여계약 및 원거리 교통비 적용요건 등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↳ 단 수급자 방문 종사자가 가족이거나, 수급자 거주지와 종사자 거주지가 5km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
 - 신청내용 누락 등이 발생할 경우, 적용이 지연될수 있으니 입력내용 재확인 부탁드립니다.

※ 원거리 교통비 인상 해당 섬지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, 가까운
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